

공동활용 연구장비 관리 지침

제정일 : 2018.12.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중인 연구장비의 공동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등을 목적으로 타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자가 운영부서를 거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활용 연구장비”라 함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의한 장비심의위원회의 공동활용 심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공간에 설치 운영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3. “운영부서”라 함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연구실 및 학과 또는 사업화 센터, 광운대학교 공동장비센터를 말한다.
4. “광운대학교 공동장비센터”라 함은 공동활용 대상 장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간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위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장비책임자”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연구실 책임교원 또는 과제 책임자, 공동장비센터장 중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광운대학교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사용 및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구축함에 있어 회계상 자산으로 등록, 관리 중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행업무)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보유한 장비책임자는 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시간 배정, 사용법 등의 교육
2.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지원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관리 및 분석 지원
3. 보유 장비 이용시간, 재료비 등 장비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리
4. 보유 장비 운영일지 기록 및 이용실적 관리, 장비 활용 성과 관리
5. 장비운영지원금의 목적에 적합한 운영 관리
6.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상시 활용 가능 상태 유지 관리
7. 공동활용 시설장비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운영 관리
8. 그 밖에 공동관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사업

제4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운영부서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의 사용장소)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운영은 광운대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비 이용신청 등) ① 이용자는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이용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장비 이용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원활한 연구장비의 활용을 지원해야 하며 기관내 거래시 운영부서는 사전 관리기관으로부터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부서에서는 공동활용하는 연구장비에 관한 일련의 사용기록을 장비관리 대장에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항에 관한 상세 이용절차는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제7조(장비사용의 중지 등)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해 장비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비 고장 및 수리 및 처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기타 이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8조(장비사용 결과)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해 지원하는 운영부서에서는 외부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활동이 종료된 경우 해당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 또는 승인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장비사용료 산정 및 납부) ① 이용자는 장비사용료를 운영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운영부서에 시설투자 비용에 관한 적정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사용료는 운영부서가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요율에 따르며 유관기관의 동일 장비 사용요율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단, 해당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운영부서는 이용자가 납부한 장비사용료를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광운대학교 「회계관리 지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침 「회계처리 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장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반출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료는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장비사용료 감면)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관리기관과 기타 외부 관련 기관 및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를 따를 경우
3.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책임) ① 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해당 장비의 고장, 파손 및 망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교육 연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당해 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의 반출) ① 장비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 학사일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이 승인된 장비는 사전 운영부서에서 이용자에게 장비 반출에 관한 장비 인수증을 교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반출된 장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운영부서에 대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장비운영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지침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8년 12월 19일로 한다.